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나26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5. 13.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소6385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는 2018. 4. 14. 원고와 D에게, “투자금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해서 E 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 보내주면 E가 비트코인캐시와 포인트를 개인 계정에 넣어준다. 투자금의 45%는 비트코인캐시로 지급받고, 55%는 E 포인트로 지급받는다. E 포인트로는 향후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예정인 비트코인캐시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4. 14. 피고 명의 계좌에 21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D은 2018. 4. 15. 피고 명의 계좌에 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8. 4. 15. C 명의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E에서 원고 명의 계정을 생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E 계정(F)의 아이디(G, H, I)와 비밀번호(J)를 알려주었다. 원고는 위 계정에 접속한 적이 없다.

라. 피고는 투자자를 소개해 준 대가(추천수당)로 E로부터 투자금의 10%에 상당하는 E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마. E 계정은 현재 폐쇄되어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원고 명의 계정에 어떠한 종류의 가상화폐와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잔존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바. 원고와 D이 피고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9. 6. 26.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형제14962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한편, D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소22116호로 투자금 28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19. 2. 13. ‘피고가 D에게 150만 원을 2019. 3. 29.까지 지급하고, D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투자금 2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투자금 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약정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어떠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거나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재판은 이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설명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E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다단계 업체로서 E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은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점, ② E 회사의 운영주체, 위 회사가 발행하여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비트코인캐디의 실체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E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이 E 계정을 통하여 가상화폐로

전환되고 수익으로 남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 본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아 C에게 전달하여, C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E 계정을 생성한 다음 이 사건 투자금으로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E가 임의로 환산한 비율에 따라 위 원고 명의 계정에 가상화폐 또는 포인트를 예치하도록 한 점, ④ 피고는 E가 그 회원이 직접 하위 직급 회원을 모집한 경우 하위 직급 회원들이 예치하는 가상화폐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는 구조, 즉 다단계 조직으로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실제로 E의 회원으로서 자신 명의의 계정을 만들어 둔 후 원고 명의로 E에 여러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들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두고 가상화폐를 예치하는 방법으로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주된 요인은 투자금의 45%를 비트코인캐시로 지급받는다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는 스스로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장 투자내용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고, 약정대로 투자할 수 없어 비트코인캐디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비트코인캐디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원고는 비트코인캐디만 지급받기로 합의한 적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캐디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된 바 없고, E의 가상화폐계정은 폐쇄되어 접속조차 불가능한 상태인바, 결국 피고가 C를 통하여 E에 원고 명의로 계정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설명한 내용(투자금의 45%는 비트코인캐시로 지급받는다는 내용)대로 투자를 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의 위 E 계정은 오로지 피고 자신이 투자금의 10%에 상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용도로만 활용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위치에 있어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자로서, E의 사업구조나 지속가능성, 비트코인캐디의 상장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E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여, E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과실이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즉시 C에게 전달하여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E 계정에 예치하도록 한 행위는, E의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E 계정이 폐쇄되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의 제한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투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인 210만 원이라 할 것이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바, 원고로서도 E의 사업구조나 지속가능성, 비트코인캐디의 상장 가능성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의 투자 권유만 믿고 높은 수익률에 유인되어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앞서 인정한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6만 원(= 210만 원 × 6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금액 상당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동, 판사 이보람, 판사 구성훈